

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b>기획재정부</b><br>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<br/>REPUBLIC OF KOREA</small> | <b>보도자료</b>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| <b>보도일시</b>         | <b>2008. 6. 4(수) 조간부터</b> |                    |
| <b>배포일시</b>   | 2008. 6. 3(화) 10:00 | <b>담당부서</b>               | 세제실 조세정책과          |
| <b>담당과장</b>   | 최영록(2150-4110)      | <b>담당자</b>                | 배정훈 사무관(2150-4111) |

**제목: '08년 상반기 세제개편(안)**

□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·3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시급한 사항에 관하여 기 개정조치\*한데 이어,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에 관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임.

\*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확대, 유류세 인하,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,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

□ 개정대상 법령은 2개 법률(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), 3개 시행령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, 주세법 시행령)으로 6월 중 차관·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
〈첨부〉 상반기 세법·시행령 개정안

**기획재정부 대변인**

# '08년 상반기 세법·시행령 개정(안)

'08. 6.

## 기 획 재 정 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정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개정(안)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.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.....       | 2  |
| 2. 성장잠재력 확충 .....                  | 4  |
| 3. 중소기업 지원 .....                   | 7  |
| 4. 비정규직,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.....       | 10 |
| 5. 관광·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.....            | 13 |
| 6.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골프장 세부담 경감 ..... | 18 |
| III.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       | 20 |

## I. 개정배경

### 1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속한 감세 추진

- 국정과제 중 시급한 개정수요는 기초차
  - 유류세 인하,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,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
-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하여 금년분부터 적용
  - 법인세율 인하(25%,13%→20%,10%) 및 최저한세율 인하, R&D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
- 전반적인 세제개편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

### 2 중소기업, 비정규직,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

-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감세와 함께 중소기업·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
  - 협력중소기업 배당 법인세 면제, 네트워크론 결제시 세액공제 인상,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등

### 3 관광산업 활성화,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세제지원

-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·음식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,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 등
- \* 「관광산업 선진화 전략」('08.3.28), 「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」('08.4.28) 등

◇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사항 중 2개 법률(법인세법, 조특법)은 6월 개원국회에 정부(안)으로 제출하고, 3개 시행령(조특령, 부가령, 주세령)은 신속한 개정 절차를 진행

## II. 개정(안) 주요내용

###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

#### (1)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(법인세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<br>○ 과표 1억원 초과: 25%<br><br>○ 과표 1억원 이하: 13%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<br>○ 과표 2억원 초과<br>: ('08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<br><br>○ 과표 2억원 이하<br>: ('08귀속) 11% → ('10귀속) 10% |

#### <개정이유>

-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
  -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⇒ 일자리 창출 ⇒ 경제 성장의 선순환 유도
  - 국가간 조세경쟁(Tax Competition)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
    - \* 법인세율 인하 국가 (단위: %)  
 (영국) 30→28('08) (독일) 25→15('08) (싱가폴) 20→18('08)  
 (홍콩) 17.5→16.5('08) (중국) 33→25('08) (대 만) 25→17.5('10)
-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(1억원→2억원)

#### <적용시기> '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(중간예납 특례) '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화된 세율 적용

**(2)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(조특법)**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최저한세율<br>○ 중소기업<br>: 감면전 과세표준 × 10%<br>○ 일반기업<br>- 감면前 과세표준(~1천억원) × 13%<br>- 감면前 과세표준(1천억원~) × 15%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<br>○ 중소기업<br>: ('08/09년) 8%, ('10년~) 7%<br>○ 일반기업<br>- ('08/09년) 11%, ('10년~) 10%<br>- ('08/09년) 14%, ('10년~) 13% |

**<개정이유>**

-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(중간예납 특례) '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화된 세율 적용

**2 성장잠재력 확충**

**(1) 연구개발(R&D)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(조특법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R&D를 위하여 연구 시험용 시설, 직업훈련용 시설,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<br>○ 공제금액 : 투자금액의 7% | ○ 공제율 상향조정 : 10% |

**<개정이유>**

- 기업의 R&D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&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**(2) R&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(조특영, 조특규칙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R&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, 견본품·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</li> <li>○ 전담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</li> <li>-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(시행규칙)</li> </ul> </li> </ul> |

**<개정이유>**

**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&D 지원세제를 문화산업 분야 까지 확대 적용**

- 기업부설창작연구소 : 출판업, 소프트웨어 자문, 게임산업, 광고업, 전문 디자인업,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설립된 연구소로 문화부 장관에 신고(6월 국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예정)

다만, 구체적인 범위는 R&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**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**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**(3)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(조특영)**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R&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체기술개발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</li> <li>○ 기술정보비,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</li> <li>○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R&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확대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추가</li> <li>○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추가</li> </ul> |

**<개정이유>**

R&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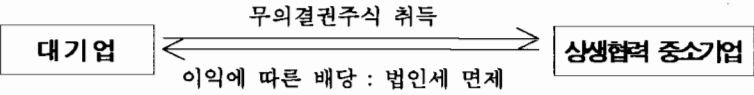
### 3 중소기업 지원

(1)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<br><br>출자비율 50(30)%초과 50(30)%이하<br>익금불산입 50% 30%<br><br>* ( ) : 상장 및 코스닥 법인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<br><br>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」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<br><br>○ 대상 :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<br><br>○ 출자기한 : '10.12.31 |

<개정이유>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
- 다만,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

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

(2)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인상 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<br><br>○ 대기업과 중소기업간<br>• 네트워크론 결제 : 결제금액의 <u>0.3%</u> (30일 이내), 0.15%(60일)<br><br>○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<br>• 모든 현금성결제 : 결제금액의 <u>0.4%</u> (30일 이내), 0.15%(60일)<br><br>○ 일몰기한 : '08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<br><br>○ 대기업과 중소기업간<br>• 네트워크론 결제 : 결제금액의 <u>0.4%</u> (30일 이내), 0.15%(60일)<br><br>○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<br>• 모든 현금성결제 : 결제금액의 <u>0.5%</u> (30일 이내), 0.15%(60일)<br><br>○ 일몰연장 : '10.12.31. |

<개정이유>

-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
- 어음발행을 축소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

※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: ('04)82.6% → ('07)92.8%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

**(3)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(부가영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<br>○ 신청일로부터 5일 (필요시 5일 연장가능)내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기한 단축<br>○ 신청일로부터 3일(필요시 5일 연장가능)내 |

**<개정이유>**

-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

\* 해외사례: 일본·영국 1일, 캐나다·벨기에 2일, 프랑스 4일

**<적용시기>**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**4 비정규직,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**

**(1)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이 '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<br>○ 세액공제 :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<br>○ 일몰기한: '09.12.31까지 전환 |

**<개정이유>**

-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

※ 금년 7.1.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제도 적용 확대  
 ⇒ '07년 정규직 전환자 : 민간부문 약 3만명, 공공부문 약 10만명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2)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<br>* 금융기관은 현재 소멸시효 완성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기납부 →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시 손금 부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이중부담 발생<br>○ 일몰기한 : '08.12.31 |

<개정이유>

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초기에는 은행·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일시에 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

○ 금년 말까지 누적된 휴면예금을 출연하여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면, 내년 이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

\* '08년 출연 예정금액 : 약 2,000억원(은행 1,400억원, 보험 600억원)

<적용시기> '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(3) 주세감면(50%) 대상 전통주의 범위확대 (주세영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(50%) 대상<br>○ 과실주 : 직전년도 500kl 이하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200kl에 한정<br>※ 전통주의 구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</td> <td>발효주</td> <td>증류주</td> </tr> <tr> <td>농민주</td> <td>복분자주 등</td> <td>더덕주 등</td> </tr> <tr> <td>민속주</td> <td>한산소곡주 등</td> <td>전주이강주 등</td> </tr> </table> * 과실주는 발효주의 일종 |         | 발효주     | 증류주 | 농민주 | 복분자주 등 | 더덕주 등 | 민속주 | 한산소곡주 등 | 전주이강주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세감면(50%)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<br>* 「주세법」 개정('07.12)으로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고, 감면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<br>○ 발효주 : (좌 동)<br>○ 증류주 : 직전년도 250kl 이하 제조자(출고기준)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100kl에 한정<br>※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|
|   | 발효주     | 증류주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농민주   | 복분자주 등  | 더덕주 등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민속주   | 한산소곡주 등 | 전주이강주 등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
<개정이유>

전통주 주세율 인하를 통해 전통주의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

○ 다만,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하여 WTO 내국민대우(National Treatment) 위반 소지를 축소

<적용시기> 2008.7.1.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5 관광·문화산업 활성화 지원

### (1)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(부가영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<br>○ 적용기한 : '07.7.1~'08.12.31<br>< 신 설 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<br>○ 적용기한 : '09.1.1~'09.12.31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<br>○ 적용기한 : 공포일~'09.12.31 |

#### <개정이유>

-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줄이고,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지원
- 조세지원이 숙박·음식요금 인하로 연결되고,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

### (2)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(부가영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<br>○ 외국환은행 송금, 신용카드,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| ○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<br>*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, 외화매입증명서 등 |

#### <개정이유>

-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
-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결제 실태(결제금액 중 30%)를 감안, 외화 현금 수령분까지 확대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

**(3)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(조특영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(29개)<br><br>○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, 관광 숙박업, 국제회의기획업 등<br><br>※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<br>·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% 세액공제 | ○ 전문휴양업·종합휴양업을 대상업종에 추가<br><br>- 숙박·휴양·놀이시설, 체육시설 적용<br><br>- 음식점, 골프장 시설은 제외 |

**<개정이유>**

**관광산업 투자활성화 지원**을 위해 전문·종합휴양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

※ 전문휴양업 :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시설을 갖춘 경우(20개 업체 등록 중)

\* 민속촌, 동·식물원, 수영장, 온천장, 농어촌·산림휴양시설, 박물관, 미술관 등

※ 종합휴양업 :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등(14개 업체 등록 중)

**<적용시기>** '08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

**(4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(조특법)**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<br><br>○ 대상업종 : 제조업 등 21개<br><br>○ 지원내용 :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 | ○ 문화산업 추가<br><br>- 영화관 운영업<br><br>- 전시 및 행사대행업<br><br>※ 상기업종 중소기업 범위 : 종업원 200인 이하, 매출액 200억원 이하 |

**<개정이유>**

**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**

**<적용시기>**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

(5) 유기사설·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사설(遊技施設) 또는 유기기구(遊技機具)에 대해 관세 경감<br>※ 구체적인 감면율 및 대상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|

<개정이유>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
  - 첨단·대형 유기사설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도모
- 관세경감대상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국내 유기사설 제작업체의 피해 최소화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

6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골프장 세부담 경감

(1)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(12,000원) 부과<br>※ 교육세(3,600원), 농특세(3,600원), 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21,120원<br>※ 체육진흥기금 3,000원 부과 (문화부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<br>○ 지방 : 서울, 인천,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<br>○ 인하효과 : 24,120원 (교육·농특세, 체육진흥기금 등 포함) |

<개정이유>

- 국내 지방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골프산업 활성화
- 해외골프수요 및 수도권 골프수요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소비진작,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

<적용시기> 2008.9.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

- 법 개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 등 관리기간으로 활용

(2)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적용(조특법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종부세 : 종합합산(1~4%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종부세 경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종부세 : 별도합산 과세특례 (0.8% : 200억원 초과분) |

<개정이유>

-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「산림법」에 의해 골프장 면적의 20%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한 점을 감안

※ 골프장 관련 지방세 감면계획(행안부) : 6월 임시국회 추진예정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| 개 선              | 소관법·령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• 재산세(원형보전지)<br>(개발지 및 건축물) | 종합합산<br>0.2%~0.5% | 별도합산<br>0.2~0.4% | 지방세법<br>시행령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리과세 4%           | 분리과세 2%          | 지방세법        |
| •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표준액의 10%        | 2%               | 지방세법        |

<적용시기> '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III. 추진일정

대상법령

- 법 률(2개) :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
- 시행령(3개) :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, 주세법 시행령

추진일정(잠정)

- 당정협의 : 6. 3(화)
- 차관회의 : 6.19(목)
- 국무회의 : 6.24(화)
- 국회제출 : 6.30(월)

< 2008년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(안)에 대한 >

# 문 답 자 료

2008. 6.

기획재정부  
세 제 실

|   |    |
|---|----|
| 1.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.....                    | 1  |
| 2. R&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3. 구매대금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| 5  |
| 4.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.....             | 7  |
| 5.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6. 외국인 관광호텔의 숙박·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<br>적용 연장 ..... | 11 |
| 7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 .....           | 12 |
| 8.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.....                   | 13 |
| 9.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.....                  | 14 |

# 1.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(P. 2)

## ①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효과

- 4년간 총 8.7조원의 감세 효과 발생
  - ('08) 1.7조원 ('09) 3.5조원 ('10) 1.2조원 ('11) 2.3조원

### ※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적용시기

| 구 분       | 현행 세율 | 구 분       | 개정 세율 및 적용시기 |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'08귀속~'09귀속  | '10귀속~ |
| 과표 1억원 초과 | 25%   | 과표 2억원 초과 | 22%          | 20%    |
| 과표 1억원 이하 | 13%   | 과표 2억원 이하 | 11%          | 10%    |

## ②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이유?

-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
  - 전체 법인의 90.4%가 10%(11%)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
    - \* 낮은세율 적용기업 확대 : 83.5%(1억원 이하) → 90.4%(2억원 이하)

## ③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적용시기는?

-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  - 12월말 결산법인(97%)의 중간예납기간은 '08.1~6월이고, 8월말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/2 또는 가결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금년 중간예납분부터 적용 ('08.7월 공포 가정)
- 2010년도에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면
  - 2010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

## 2. R&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(P. 5)

### ① R&D 전담부서의 개념?

“전담부서”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, 건본품·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&D비용에 해당

#### 전담부서의 개념(기술개발촉진법)

- 기업부설연구소 : 연구전담요원\*을 늘 확보하고,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
- 연구개발전담부서 : 연구전담요원\*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

#### \* 연구전담요원의 수

| 연구소구분    | 기업구분       | 연구전담요원 수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부설연구소  | 벤처기업       | 2명 이상 (단,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) |
|          |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| 5명 이상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국외 기업연구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기 타        |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|
| 연구개발전담부서 | 일 반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|

#### \* 연구전담요원의 자격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일반   | 자연과학계열·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(단,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) 또는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  |
| 중소기업 |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 졸업한 자(단,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|

### ② 기업부설창작연구소란?

“기업부설창작연구소”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, 건본품·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&D비용에 포함할 예정

#### 기업부설창작연구소

- 전문디자인업, 소프트웨어 자문, 게임산업, 광고업, 출판업,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설립된 연구소로 문화부장관에 신고
  - 설립요건등은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전담부서와 유사
- 근거법률
 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('08년 6월 임시국회 개정예정)

###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“기업부설창작연구소”로 제한한 이유는?

기업부설연구소는 「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기술개발\*을 위한 연구소로서 연구소의 활동목적이 R&D(연구개발)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함

\* “기술개발”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·제품·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

○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인문·사회과학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그동안 R&D세액공제 대상 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으로

-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라 하더라도 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업무활동이 세액공제 대상 R&D에 해당하는지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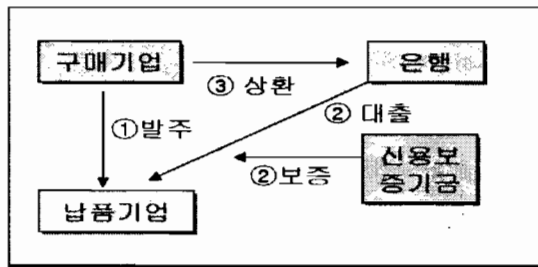
### 3. 구매대금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(P. 8)

#### ① 현금성 결제 수단의 종류

##### 1. 네트워크론

-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,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
- \* 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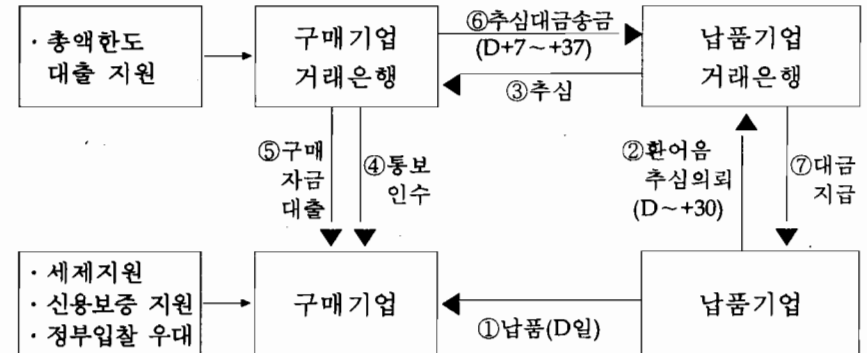
<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>



- ① 사전에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(구매기업)이 협력 중소기업(납품기업)에 발주
- ② 발주와 동시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(대출)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에 대해 상환을 보증
- ③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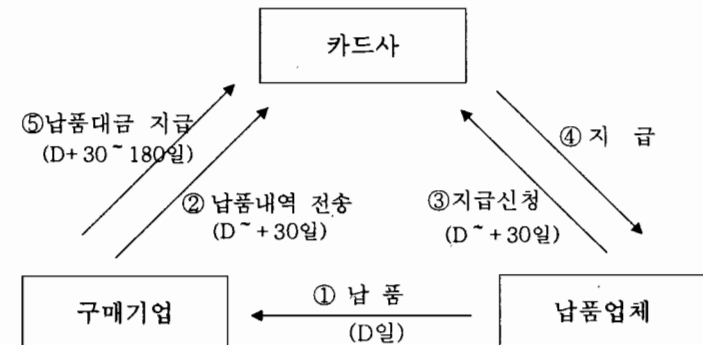
##### 2. 기업구매자금대출(환어음)

-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,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(at sight)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



##### 3. 기업구매전용카드

-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(구매기업,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사간에 사전에 지급기일 등 조건을 약정)



#### 4.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(P. 11)

① 휴면예금이란 무엇이며,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지

- 휴면예금이란 법률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, 보험금 등을 말함
  - \*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 거래종단 후 5년  
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·보험계약 만료 후 2년
  - \* '08년 출연 예정금액 : 약 2,000억원(은행 1,400억원, 보험 600억원)
-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
  - 휴면예금의 관리·운용 및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
  -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·감독
    - 저소득층의 창업·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
    -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
    -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·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
    - 저소득층의 교육비·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

#### ②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하는 이유

-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재원 확보에 있어 법인세 등 과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세제지원할 계획으로
  - \*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휴면예금 및 법인·단체·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구성
  - '08.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기 지정
    - \* 재단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일정한 범위(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%, 개인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(법인 또는 필요경비)개인)로 인정
- 다만, '08년에는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일시에 출연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
  - \* 약 2,000억원(휴면예금 약 1,400억원+휴면보험금 약 600억원)
  - '08년에 한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
  - '09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매년 발생하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므로 출연금의 규모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보다 작아
    -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

## 5.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(50%) 범위 확대 (P. 12)

### ① 전통주의 개념

#### □ 전통주란 민속주 또는 농민주를 통칭

○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·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(문화재청장 추천) 또는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(농림부장관 추천)

- 예 : 안동소주, 문배주, 전주 이강주, 한산 소곡주 등

○ 농민주는 농·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(농림부장관 추천)

- 예 : 고창 복분자주, 지리산 머루주 등

### ② 주세감면 대상 주류

| 요건      | 현행               | 개정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주종 요건 | 과실주<br>(발효주의 일종) | 발효주 전체<br>(과실주, 탁주, 약주, 청주 등)<br><br>증류주 전체 (소주, 리큐르 등) |
| ② 지정 요건 | 농민주              | 농민주<br><br>+ 민속주 (안동소주, 한산소곡주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(세율) 안동소주, 문배주, 이강주 : (현행)72% → (개정)36%

한산 소곡주 : (현행)30% → (개정)15%

\* 복분자주 등 과실주는 현재 주세 50% 감면중

### ③ 소규모 酒類 제조자에 대한 외국의 감면 제도

#### □ 미국

##### ○ 소규모 국내 맥주 및 포도주 생산자에 대해 감면

- 맥주 : 연간 200만 배럴(318,700kl)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6만배럴까지 감면(\$18/배럴→\$7/배럴)

| 소규모 생산자의 범위      | 일반 세율   | 연간 6만 배럴에 대한 경감세율 | 감면율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연간 생산량 2백만 배럴 이하 | \$18/배럴 | \$7/배럴            | 61% |

주 1배럴 = 42갤런 = 160리터

- 포도주 : 14%이하의 경우 연간 25만갤런(946.3kl)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10만갤런까지 감면(\$1.07/갤런→\$0.17/갤런) 등

\* 연간 15만갤런(570kl) 초과 시 1천갤런당 900불씩 감면세액(공제액)이 축소

| 소규모 생산자의 범위     | 알코올 도수    | 일반 세율 (갤런당, A) | 공제액 (B) | 공제 후 세율 (A-B) | 감면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연간생산량 25만 갤런 이하 | 14% 이하    | \$1.07         | \$0.90  | \$0.17        | 84% |
|                 | 14~21%    | \$1.57         | \$0.90  | \$0.67        | 57% |
|                 | 21~24%    | \$3.15         | \$0.90  | \$2.25        | 29% |
|                 | 탄산포도주 사과주 | \$3.30         | \$0.90  | \$2.4         | 27%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\$0.226        | \$0.056 | \$0.17        | 25% |

#### □ EU

○ 소규모 생산자\*에 대해 최대 50% 감면 및 지방특산품·전통특산품에 대해 면제 허용

\* 주종별 소규모 생산자 범위 사례

- 맥주 : 연간 20만 hl(2,000kl)이하 소규모 자영업자

- 포도주 : 알콜 8.5% 이하 생산자 (규모제한 없음)

- 기타 증류주 : 연간 10만 hl(1,000kl)이하 소규모 생산자

## 6. 외국인 관광호텔의 숙박·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장 (P. 13)

①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여 관광호텔 업계도 숙박료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?

- 정부는 조세감면이 내수진작과 산업경쟁력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음
- 이번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도 숙박·음식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결정되었음
-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계에서도 숙박·음식 요금 인하, 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
  - 이를 위해 관광호텔업협회와 관광호텔이 자구노력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임

### <관광호텔업계의 자구노력내용>

- ◇ 숙박·음식요금 인하
  - 서울시내 호텔이 '07년부터 숙박요금 평균 20% 인하
  - 관광호텔업협회가 '08년부터 숙박·음식요금 인하를 지도·감독
- ◇ 원가 절감
  - 중저가 관광호텔을 체인화('07.4월부터)
  - 항공·여행사와 예약시스템 공동활용('08년중)
- ◇ 서비스 품질 제고
  - 인천공항내 종합안내소를 '07년부터 운영
  - 관광호텔업 협회 주관 서비스교육을 '08년부터 실시
- ◇ 해외홍보 강화
  - CNN 등에 한국관광홍보 광고를 '08년부터 방영

## 7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 (P. 15)

①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의 범위

### 전문휴양업

-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(관광진흥법)
  - 한국아쿠아리움, 한국민속촌, 아산스파비스 등 20개 업체 등록중
  - 민속촌, 수렵장, 해수욕장, 동·식물원, 수족관, 온천장, 동굴자원, 수영장, 농·어촌휴양시설, 산림휴양시설, 박물관, 미술관, 종합체육시설업 등

### 종합휴양업

-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, 전문휴양시설 1종류 이상과 종합놀이시설을 갖춘 경우
  - 서울드림랜드, 휘닉스 파크 등 14개 업체 등록중

② 구체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?

-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내에 있는 숙박 시설·전문휴양시설(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)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함
-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시설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밖에서도 임투공제 적용대상이 아님
  -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(놀이기구) : 회전관람차, 롤러코스터, 청룡열차, 후름라이드, 신밧드모험, 밤퍼카 등 유기시설

## 8. 유기시설·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(P. 17)

### ① 구체적인 경감대상 및 경감을

□ 구체적인 경감대상 및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
(조특법 §118②)

- 조세특례제한법상 “유기시설 등에 대한 관세경감” 근거 규정을 신설 후, 기획재정부령\*으로 구체적인 경감대상과 경감률을 규정할 예정

\*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

□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지정

- 국내제작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가 감면대상으로 지정·신청하는 품목에 대해 국내제작 곤란여부를 검토한 후

-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만 관세 경감대상으로 지정·고시

□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50%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다른 관세경감 제도\*와의 형평성을 고려

\* 고속철도,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, 디지털TV 방송장비 등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50%를 경감

\* 대부분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관세율은 8%임

## 9.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(P. 18)

### ①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현황

| 구 분         |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<br>세      | • 개별소비세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    | 19,200원                   | 전액감면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• 증부세(원형보전지) <sup>2)</sup>               | 종합합산 1~4%                 | 별도합산특례 <sup>3)</sup> 0.8% |
| 지<br>방<br>세 | • 재산세 <sup>4)</sup> (원형보전지)<br>(개발지·건축물) | 종합합산 0.2%~0.5%<br>분리과세 4% | 별도합산 0.2~0.4%<br>분리과세 2%  |
|             | •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표준액의 10%                | 2%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기<br>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             | 3,000원                    |

1) 개별소비세 12,000원 + 교육세 및 농특세(각각 개별소비세의 30%)

2) 증부세의 부가세(Sur-tax)인 농특세(20%)도 경감

3)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.8% 단일세율 적용

4) 재산세의 부가세(Sur-tax)인 교육세(20%) 및 도시계획세(0.15%)도 경감

②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시 가격 인하 효과

- 세부담 경감분(취득세 제외)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**인하효과는 3만원~4만원 내외로 예상**

| 구 분 | 주 중     | 주 말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현 재 | 12~15만원 | 17~20만원 |
| 개 선 | 8~12만원  | 13~17만원 |

\* 출처 : 한국레저산업연구소

※ 골프장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인하는 제외

- **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**

- **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·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(2년)로 운영**

\*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간 경영개선을 위한 MOU 체결 예정

→ 시행성과에 따라 **지속 여부 판단**

- **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 자구노력 계획**

- **골프장 이용가격 인하 : 세금 인하분 +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하액(세금인하분에 상응)**

- **부대서비스(카트, 식음료 등)에 대해 소비자 자율선택권을 확대**

③ 지방 골프장만 세부담을 경감한 이유는?

- **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수요 상태<sup>\*</sup>이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이용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함**

- **설령 이용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부킹난만 심화시킬 뿐 서비스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**

\* **골프장 혼잡도의 지표인 홀당 이용객수가 수도권은 증가추세이나, 지방은 감소추세임**

<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(단위: 명)>

| 구 분 | '05   | '06   | '07 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 국 | 3,735 | 3,780 | 3,751 |
| 수도권 | 3,885 | 4,055 | 4,101 |
| 지 방 | 3,577 | 3,518 | 3,468 |

- **반면, 지방은 최근 골프장 수의 증가<sup>\*</sup>로 인해 초과수요 흡수 여력이 있음**

- **세금 감면을 통해 지방 골프장의 이용가격이 3~4만원 이상 낮아질 경우 수도권 골프장의 초과수요 흡수 및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**

\* '05~'07년간 골프장(회원제·퍼블릭) 수 증가  
: (수도권) 8개소, (지방) 45개소

1) 골프장경영협회